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733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승강기의 검사)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도 없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하여 신기술 승강기 개발 촉진을 통한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 주요 개정 내용

- 화재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상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리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내화 성능 등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 유리 등의 사용을 허용
- 승강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하여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를 허용
- 승강기로의 접근 방식을 위하여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 규정 삭제
- 승강기 로프를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 그간 특정방식만을 허용하였으나 안전성이 확인된 다양한 고정방식을 허용

3.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

3.1.1(1) ④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1(1) ④ 씌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닛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의 연결은 주로프 최소파단하중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권동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권동축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램프 고정으로 할 수 있다.

3.1.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2(2) 구조상 경미한 부분(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 내장재를 포함)을 제외하고는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유리를 사용할 경우(삭제)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용 엘리베이터에 유리 등 특수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의 내화성능시험 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내화성능이 입증되어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3.1.3(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3(2) 승강로의 벽 또는 울 및 출입분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 다만 승강로의 벽(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한정)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삭제) 한국산업규격의 망유리·강화유리·접합유리 및 복층유리(16mm이상)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6) ②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3(6) ② 수평거리가 12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속제판 또는 기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최상정지층의 바닥아래에서 최하정지층의 출입구상부까지 출입분을 제외한 카 출입구에 면하는 전체부분에 대하여 보호면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헤더케이스상부와 보호면 하단까지의 틈새는 38mm 이하이어야 하나, 보수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00m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출입문이 상승개폐문 또는 상하개폐문일 때에 출입분이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3(8) 삭제

3.1.11(8)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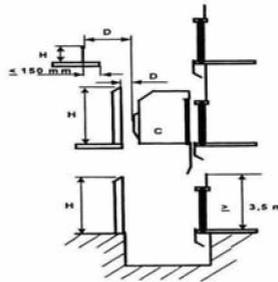
3.1.11(8) 승강로는 승강장에 통하는 출입구 및 기계실에 통하는 와이어로프 전선 등의 주위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 등 특수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는 한국산업규격의 내화성능시험 방법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내화구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내화구조인정서로 확인한다.

3.1.3(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3(1) 승강로 밖의 사람이나 물건이 카 또는 균형추에 닿을 염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견고한 벽 또는 울림 흡입문(비상구출구를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승강로 주벽이 일부 없는 엘리베이터는 사람의 접근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의 높이까지 둘러 쌓인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승강장 문쪽에서 최소 3.50m 이상
- 다른 쪽 및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분과의 최소 수평거리가 0.5m 인 곳에서 최소 2.50m, 만일 움직이는 부분까지 거리가 0.50m를 초과하면 2.50m의 깊은 순차적으로 줄며 2.0m의 거리에서 최소 높이가 1.10m 까지 될 수 있다. <그림1, 그림2 참조>
- 둘러 쌓인 부분은 복도, 계단 또는 플랫폼의 가장자리로부터 최대 0.15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의 접합유리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외기에 노출된 엘리베이터 즉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추가로 선문기관의 안전성평가를 통한 특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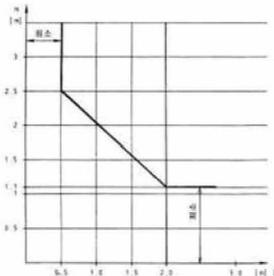


<그림 1> 부분적으로 둘러 쌓인 승강로

C 카

H 둘러 쌓인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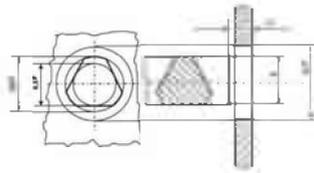
D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분까지의 거리(그림 2 참조)



<그림 2> 움직이는 부분과의 거리에 따른 높이

3.1.6(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6(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한 장치는 그림 3에 규정된 삼각형의 잠금해제장치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한 키에는 사용상의 위험과 승강장문이 닫힌 후 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치수는 밀리미터(mm)
(그림 3) 열쇠구멍(unlocking triangle)

3.2.1(1)④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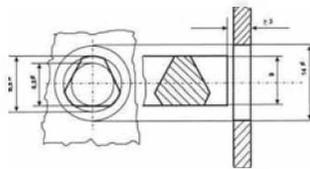
3.2.1(1)④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벳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의 연결은 주로프 최소파단하중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4.1(1)④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4.1(1)④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벳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의 연결은 주로프 최소파단하중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적재하중이 500kg 이하인 경우에는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고, 권동식 덤웨이터의 경우에는 권동 쪽의 끝부분을 클램프고정으로 할 수 있다.

3.4.6(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4.6(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층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한 장치는 그림 3에 규정된 삼각형의 잠금해제장치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한 키에는 사용상의 위험과 승강장문이 닫힌 후 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치수는 밀리미터(mm)
(그림 3) 열쇠구멍(unlocking triangle)

3.5.1(1)⑤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1(1)⑤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벳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거나 클립고정으로 하고, 체인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강제 고정구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의 연결은 주로프 최소과단하중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권동식 소형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권동축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립고정으로 할 수 있다.

3.5.6(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6(2) 카가 정지하고 있지 않은 중에서는 특수한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밖에서 승강로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장 출입문을 개방하기 위한 장치는 그림 3에 규정된 작각형의 잠금해제장치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한 키에는 사용상의 위험과 승강장분이 닫힌 후 분의 잠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4.3.2(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2(14) 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 등과의 사이에 운행방향(운행방향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생기는 3각부에 사람의 머리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조치기 되어 있어야 한다.

4.3.2(14)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2(14)① <그림 4>과 같이 3각부가 형성되지 않도록 3각부 틈새의 수직거리가 30cm 되는 곳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하되 디딤판의 진행속도로 부딪혔을 때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는 탄력성이 있는 재료(스폰지 등)로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천장부 또는 측면부가 핸드레일의측 끝단에서 50c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또는 교차각이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2(21)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2(21)② 주의표지판은 국문으로 읽기 쉽게 표기하거나 크기 80mm×80mm 이상의 그림으로 <그림 5>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5.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1 완성 및 수시검사에서는 3.의 전항목과 3.에서 정하지 않은 4.의 각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검사항목 중 완성 및 수시검사 시 현장확인 이 불가능한 부분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5.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2 정기검사에서는 4.1.1(4) 하중시험과 하중(분동)을 사용하는 검사들 제외 한 4.와 7.의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또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상태를 점검한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6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안) 입안예고

1. 취지

'09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 되었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 중 K 61000-3-2(고조파 전류 한계값) 등 3종을 개정하고, K 60725(기준 임피던스) 및 K62233(전기자기장(EMF)) 등 4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60725(전기기기의 방해특성 결정을 위한 저압 배전계통의 공급 및 기준 임피던스(상당 정적전류 75 A 이하))를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나.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62233(인체노출과관련된가전제품및 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측정방법)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다.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62311(전기자기장(0Hz ~ 300GHz)의 인체 노출 제한에 관련한 전자 및 전기기기의 평가)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라.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 61000-3-12(제3부 : 한계값 - 제12절 : 공공전원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입력전류 상당 16 A 초과 75 A 이하))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마.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 K 61000-3-2(제3부 : 한계값 - 제2질 : 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상당 입력전류 16 A 이하 기기)에 3.16항에 “진 고조파전류” 등 용어를 추가, “6.2.3항 일반 요구사항에 시험의 반복성, 6.2.3.2항 시각과 멈춤, 6.2.3.3항 한계값의 적용” 등을 추가하고, 오·탈사 정정을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바.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 K 61000-3-3(제3부 : 한계값 - 제3질 : 정격전류 16A까지의 기기에서 사용하는 저전압 배전시스템의 전압변동과 플리커의 한계값)에 3.11 조건적 연결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6.6일반시험조건에 “S 전압 발생기 G와 다음 요소들 갖는 참고 임피던스 Z로 이루어진 전원 소스: $= 0.24; = 0.15; = 0.16; = 0.10$ ”를 “S 전압 발생기 G와 다음 요소들 갖는 참고 임피던스 Z로 이루어진 전원 소스: $RA = 0.33 \Omega; iXA = 0.20 \Omega, RN = 0.34 \Omega; iXN = 0.17 \Omega$ ”로 변경하고, 부록의 A.2 조명기구의 시험조건 등을 개정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

● 개정기준 별첨

사.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 K 61000-3-11(제 3-11 부 : 한계값 - 공공 저전압 배전시스템에서의 전압변화, 전압변동 및 플리커의 한계값 - 75A 이하의 정격전류와 조건부 연결된 기기) 1.항 적용범위에 주파수 “50Hz”를 “60Hz”로 변경하고, 부록B의 “S 공급기 전압 발생기 G와 발생기 임피던스 Z를 포함한 다음의 요소들을 가진 시험 임피던스 Z으로 구성되어진 전원공급원 Zref를 이용한 6.1과 6.2에 관련된 시험에 대해서는 $RA = 0.24 \Omega; 50 \text{ Hz에서 } XA = j 0.15 \Omega; RN = 0.16 \Omega; 50 \text{ Hz에서 } XN = j 0.10 \Omega$; 다른 Ztest값은 6.1.1에 따라야 한다.”를 “S 공급기 전압 발생기 G와 발생기 임피던스를 포함한 다음의 요소들을 가진 시험 임피던스 Z으로 구성되어진 전원공급원 Zref를 이용한 6.1과 6.2에 관련된 시험에 대해서는 $RA = 0.33 \Omega; 60 \text{ Hz에서 } XA = j 0.18 \Omega; RN = 0.33 \Omega; 60 \text{ Hz에서 } XN = j 0.18 \Omega$; 다른 Ztest값은 6.1.1에 따라야 한다.”로 변경하고, 오·탈사 정정을 위하여 개정

● 개정기준 별첨

3. 의견제출

붙임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 12. 16.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리.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 기술표준 2008.12